

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5년 10월 4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5년 10월 6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22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(2005. 10. 13) 상정
- 제122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(2005. 10. 13) 원안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문화산업과장 최 인 용)

가. 제안이유

- 만화문화의 보급·확산, 만화박물관, 만화도서관 및 만화규장각 등의 보유 자료의 재산적 가치 증대와 연관업체 육성 등 산업적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,
- 현재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천만화정보센터의 법인격을 재산 중심의 재단법인으로 변경하여 만화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만화정보센터의 법인격을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변경함
(안 제3조 및 제9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p>○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?</p> <p>○ 재단법인으로 변경시 현재의 재산가치 등이 정확히 평가가 이루어진 후 추진함이 타당할 것임.</p>	<p>○ 만화와 문화산업 재산적 가치의 증가와 연관 업체의 육성 등 산업적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규모와 성격에 맞는 재단법인으로 운영코자 함.</p> <p>○ 현재의 만화산업에 대한 정확한 재산적 가치를 평가 한 후 변경 추진토록 하겠음.</p>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440호
의결 년월일	2005. 10. 21 (제122회)

제출년월일 : 2005. 10. 4.

제출자 : 부천시장

□ 제안이유

- 만화문화의 보급·확산, 만화박물관, 만화도서관 및 만화규장각 등의 보유 자료의 재산적 가치 증대와 연관업체 육성 등 산업적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,
- 현재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천만화정보센터의 법인격을 재산 중심의 재단법인으로 변경하여 만화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

□ 주요골자

- 만화정보센터의 법인격을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변경함
(안 제3조 및 제9조)

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” 를 “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” 로 한다.

제3조 제1항중 “민법에 의한 사단법인”을 “「민법」에 의한 재단법인”으로 한다.

제9조중 “민법중 사단법인”을 “「민법」중 재단법인”으로 한다.

제7조중 “지방재정법”을 “「지방재정법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부천시만화정보 센터의 운영은 재단법인 설립등기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</u></p> <p>제3조(기능) ①만화정보센터를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하며, 그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9조(민법 및 타법령의 준용) 법인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<u>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</u></p> <p>제3조(기능) ①----- 「민법」에 의한 재단법인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민법 및 타법령의 준용) ----- ----- 「민법」중 재단법인 ----- -----.</p>